



## 원전수출보증 사각지대 해소한다

- 1,250억 원 규모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보증보험 특별지원

원전설비 수출에 나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2월 28일(수), 총 1,250억 원 규모의 원전수출 보증보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월 22일 제14회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1조 원 규모 원전 특별금융지원 정책 중 하나로, 탈원전 정책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 원전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 수주에 성공하고도 여신한도 부족으로 인해 수출 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보증 한도를 기존 대비 최대 3배까지 확대하고, 2백만 불 이하의 보증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보험료도 20% 추가 할인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원전·금융분야 전문가로 특례인수 위원회를 구성, 부보율 제한(90% 이내), 기업별 총한도 설정(최대 1,500만 불) 등 위험관리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하였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원전설비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원전설비 5조 원 수출 조기달성(2027년→2024년) 및 2027년까지 수출 10조 원 달성, 수출 중소·중견기업 100개 사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원전 수출일감 통합 설명회’ 개최(8월), ‘원전수출특별관’ 설치(10월),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신설(11월, 13개사 선정)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쳤다. 올해도 원전수출 보증보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의 참여 기업을 추가 선정하는 등 수출 잠재력이 높은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보증보험발급을 원하는 기업은 2월 28일부터 무역보험공사 전용창구(02-399-5786)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무역보험공사 누리집(www.ksure.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세진 원전산업정책국장은 “정부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넘어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해, 수출 포트폴리오를 대형원전, 원전설비, 서비스로 다각화할 것이며, 이번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원전산업정책국	책임자	과 장	문준선 (044-203-5280)
	원전수출협력과	담당자	주무관	강민국 (044-203-5284)

**1. 배경**

□ 기존 수출보증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중견 원전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원전수출에 특화된 수출보증(보험) 신설

\* 수출보증서 발행 금융기관이 보증이행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 탈원전 정책 등으로 인해 국내 원전기업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도 여신한도 부족 등으로 수출보증발급에 애로 호소

**2. 내용**

□ (보증대상)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증

□ (지원대상) 원전 관련 수출계약을 체결한(예정인) 중소·중견기업

□ (지원규모) '24년 1,250억원(1社당 1,500만불 이내)

□ (운영주체) 한국무역보험공사

□ (기존 보험과의 차이점) 한도 우대(최대 3배), 심사 간소화, 보험료 할인

구 분	무보 수출보증보험	원전수출보증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 3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례인수위원회* 심사를 통해 특별 한도 부여(최대 3배, 1,500만불 이내)</li> <li>- 한수원 유자격社, 원전수출첫걸음 기업은 특례위심사 없이 1.5배 지원 (1,000만불 이내)</li> </ul> </li> </ul>
심사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발급신청 건에 대해 기업 신용평가, 한도심사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백만불 이하 건은 한도심사 생략</li> <li>* 단, 신용도 최하수준(G급) 제외, 자기자본 이내</li> </ul>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 25%, 중견 15% 할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 40%, 중견 32% 할인</li> </ul>

\* 특례위원회: 원전·금융 전문가로 구성되며, 심사를 통해 특별한도 부여

**□ 입찰 보증**

- 경쟁입찰의 낙찰 후 계약체결을 보장하여 발주자가 입을 수도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증
- 사업 낙찰 후 수주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발주자가 손실을 본 경우 금융기관이 대신 배상

**□ 계약이행보증**

- 계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보증서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의 입찰 재실시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기 위한 보증
- 계약자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이로 인한 손실액을 금융기관이 배상하는 보증

**□ 선금금 보증**

- 계약을 체결 후 발주자로부터 계약의 이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계약 대금의 일부를 선지급 받을 때 제출
- 계약자가 선금금을 받은 후에도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지급한 선금금에 대한 손실 중 일정 부분을 금융기관이 배상

**□ 하자 보증**

- 계약완료 후 일정기간내 하자 발생시, 수주자가 하자를 보수·복구해야 하나, 불이행 시 발주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증